No.320 2026. 07. 21

차이나 산업정책 브리프

CHINA Industrial Policy Brief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황산암모늄 수출상품검사 의무화

1. 배경

■ 요소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황산암모늄 수출관리 강화

- 최근 일부 기업이 수출관리 대상인 요소를 황산암모늄으로 허위 신고해 우회 수출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 정부가 비료류 수출관리를 강화

- 요소와 황산암모늄은 모두 백색 결정 형태로 외관이 유사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지만, 질소 함량(요소 약 46%, 황산암모늄 약 21%) 등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목 식별이 가능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출 단계에서 상품검사를 의무화하여 허위 품목 신고를 차단하고 요소의 우회수출을 방지

*** 황산암모늄 용도 :**

► (비료용) 황산암모늄은 질소(21%)와 황(S)을 동시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비료로 벼, 밀, 옥수수 등 일반 작물뿐 아니라 차·담배·과수 등 황 요구량이 높은 경제작물에 주로 사용

► (산업용) 카프로락탐(Caprolactam) 및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산물로, 수처리제, 난연제, 의약품 및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2. 주요 내용

■ 중국, 황산암모늄 수출상품검사 의무화 시행

- 해관총서는 7월 14일 〈제97호 공고〉를 통해 7월 16일부터 황산암모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상품검사를 의무화

*** B(수출상품검사)**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전에 해관의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감독조건

• **황산암모늄 관련 2개 HS 품목에 해관 감독조건 'B'(수출상품검사)를 신설**

- HS 31022100(황산암모늄) : B(수출상품검사) 신규 추가(B)

- HS 31022900(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 B(수출상품검사) 신규 적용

• 중국은 2023년 요소 수급 불안 당시에도 통관관리 강화와 수출 자제 등을 통해 비료 수출을 관리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허위 신고를 통한 우회수출 방지와 품목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

3. 중국 황산암모늄 시장 동향

■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모두 상승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황산암모늄 수출량은 2,13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

•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154.8달러로, 2024년(148.6달러) 대비 6.2달러 상승

〈중국 황산암모늄 수출량 연도별 추이〉

(단위 :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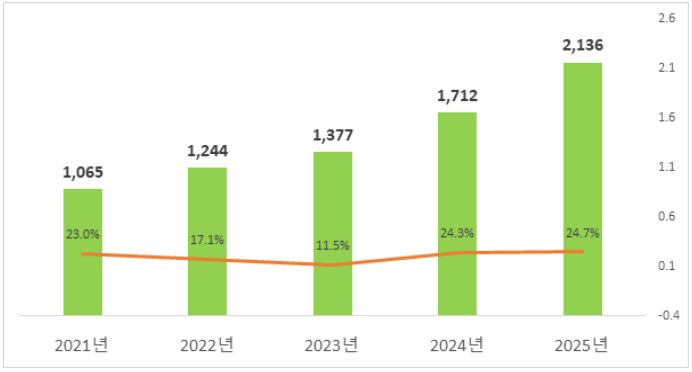

출처 : 해관총서

〈중국 황산암모늄 평균 수출단가 연도별 추이〉

(단위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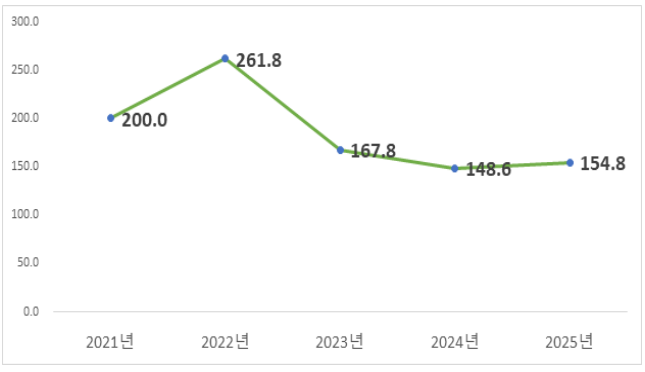

출처 : 해관총서

■ 주요 수출시장 및 한국의 수입 비중

• HS 31022100(황산암모늄)의 2025년 총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0% 증가

- 브라질, 미얀마,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호주, 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상위 10대 수출대상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의 70.7%(23억 4,000만 달러)를 차지

- 브라질이 12억 3,000만 달러로 최대 수출시장인 가운데, 미얀마 1억 9,200만 달러, 튀르키예 1억 6,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35위 수출대상국으로 1,300만 달러(전체의 0.39%)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4.1% 증가

• HS 31022900(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의 2025년 총 수출액은 645만 6천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상위 10대 수출대상국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뉴질랜드, 호주, 튀르키예, 태국, 앙골라, 모잠비크, 우루과이 순이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94.5%를 차지

- 칠레가 140만 3,000달러로 최대 수출시장인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114만 3,000달러, 한국 67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의 10.3%(67만 달러)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45.3% 증가

4. 시사점

■ 수출규제 보다 통관관리 강화 성격

• 금번 조치는 수출금지나 수출허가제, 수출쿼터 도입과 같은 직접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아니라, 수출상품검사를 의무화하여 통관 단계의 품목관리와 통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

• 한국은 일반 황산암모늄의 수입 비중은 크지 않은 반면, 복염·혼합물은 중국의 3대 수출시장에 해당하는 만큼, 금번 수출상품검사 의무화에 따른 통관 지연 시 국내 관련 산업의 원료 조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검사수수료와 보관료 등 물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허위 품목 신고가 적발될 경우 반송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

■ 중국 비료 수출관리 강화 기조 지속 여부 주목

• 중국은 세계 최대 황산암모늄 수출국으로 글로벌 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검사 의무화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비료 공급과 가격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해관총서

2 中, 7월 10일부터 헬륨에 임시 수출금지 관리 실시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2026년 7월 10일부터 헬륨(氦气, HS Code 2804290010)에 대해 임시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헬륨은 의료용 MRI, 항공우주, 반도체 제조, 심해잠수, 산업용 보호가스 등에 사용되는 대체가 어려운 전략 희소가스로, 첨단산업에 널리 활용

- 글로벌 공급 차질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요 증가로 중국 내 헬륨 가격이 대폭 상승

- 중국 시장조사기관 주오촹정보(卓创资讯)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중국산 고순도 헬륨 평균가격은 158.8위안/㎥(3만 5,000원)으로 2월 말 대비 145.4% 상승했으며, 수입산은 189.0위안/㎥(4만 1,300원)으로 같은 기간 130.5% 상승

■ **중국 측 분석**

- **(상무부연구원 연구원 저우미)**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수출제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

- **(중국공업가스협회 이사장 푸춘간)**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 내 반도체·의료·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의 원료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헬륨 탐사·정제·회수 등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 **(중국 경제전문매체 운영상재경망)** 중국의 헬륨 대외 의존도는 약 84%이며, 수입의 약 98%를 카타르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기보다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헬륨 수급을 위한 공급망 관리 강화 조치로 분석됨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전략광물에 이어 희소가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물자 공급망 관리 강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향후 중국 정부는 헬륨뿐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전략 희소가스와 핵심 소재에 대해서도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관리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전략물자 관리 범위 확대와 글로벌 희소가스 시장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상무부

3 中,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기술요건 구체화

■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자료 기술통칙〉을 발표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 동 통칙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자료의 작성기준과 심사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

* **화장품 신원료** :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원료를 의미. 원료의 기능 및 안전성 수준에 따라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절차와 제출자료 요건을 차등 적용

■ 주요 내용

• **신원료 유형별 제출자료 세분화**

- 신원료를 화학합성, 천연유래(식물·동물·광물), 바이오기술,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료 특성과 제조공정에 따라 제출자료 요건을 세분화

• **위험도 기반 안전성 평가체계 도입**

- 신원료를 기능 및 안전성 수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독성시험 및 인체 안전성 자료를 차등 적용

- 기존 화장품 사용 이력, 식용 이력, 고분자 특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일부 독성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전성 입증자료 요건 강화**

- 기존 안전성 정보, 독성시험, 인체 안전성 시험 및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신원료의 사용 목적, 적용 범위 및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 입증을 요구

•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관리 강화**

- 제조공정, 품질규격, 불순물 분석, 안정성시험 및 생산배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자료 제출기준을 구체화

• **기능 입증자료 명확화**

- 신원료의 사용 목적에 따라 효능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미백, 자외선차단, 방부, 염모 등 인체에 직접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는 작용기전과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

• **제출자료의 형식과 등록인 책임 강화**

- 제출자료는 중국어로 작성하고, 출처와 원문 및 번역본을 첨부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날인을 요구

- 등록인은 제출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

■ 시사점

• 이번 기술통칙은 신원료 개발부터 안전성 평가, 품질관리, 효능 입증까지 전 주기의 기술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중국의 신원료 심사체계를 한층 정비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위험도 기반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원료 유형별 제출자료를 세분화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 신원료를 등록하려는 기업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독성자료 확보, 제조공정 관리, 품질규격 설정 및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기능성 신원료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 입증 요건도 강화된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형식과 시험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원료 등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